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55호
- 발 의 자 : 김소영 의원(찬성자 9명)
- 발의일자 : 2019년 1월 30일
- 회부일자 : 2019년 1월 31일

2. 제안이유

-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 이후 장애인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 장애인체육 기반 조성 및 장애인체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지원 강화가 요구됨과 동시에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체육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5.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훈련을 목적으로 육상장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연습사용료를 전액면제 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시 대표팀 선수의 훈련시 전용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장애인체육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가. ~ 다. (생략) 라. <u>서울특별시육상경기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훈련을 목적으로 육상장(트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연습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u> 2. (생략) 3. 별표 3의 전용사용료 면제 가. ~ 나. (생략) 다. <u>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시 대표팀 선수의 훈련</u> 4. (생략)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서울특별시육상경기연맹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육상연맹</u> ----- ----- 2. (현행과 같음) 3.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u> ----- 4. (현행과 같음) |

- 현재 서울시육상연맹 등록 선수(623명, '18년 기준)는 주로 잠실 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에서 사용료 전액을 면제받으며 개인연습을 하고 있으나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 등록 선수(134명, '18년 기준)는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개별사용료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시 대표팀 선수가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할 경우에 전용사용료가 면제되는 반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훈련은 사용료 면제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음.

올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서울 개최에 맞춰 장애인 선수들의 체육 시설 사용료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기량을 증대시키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서울특별시육상경기연맹은 서울특별시육상연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함.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라. 서울특별시육상경기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훈련을 목적으로 육상장(트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연습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라. 서울특별시육상경기연맹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 | 라. 서울특별시육상연맹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 |
| | --- | --- |
| | --- | --- |
| | --- | --- |